

평생교육원 운영규정

제정 2015.03.20

1차 개정 2024.05.13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원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.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원은 본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,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원은 본 대학에 둔다.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) ① 본원에는 원장, 부원장, 연구위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 〈개정 2024.5.13.〉

② 원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로 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 〈개정 2024.5.13.〉

③ 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〈신설 2024.5.13.〉

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본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 〈신설 2024.5.13.〉

⑤ 연구위원은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임명하며, 교육프로그램 개발, 학습자 모집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〈신설 2024.5.13.〉

⑥ 행정지원팀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 및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다. 〈신설 2024.5.13.〉

⑦ 원장은 필요 시 교육원 내 한시조직을 둘 수 있다. 〈신설 2024.5.13.〉

제5조(교직원) 삭제 〈2024.5.13.〉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〈개정 2024.5.13.〉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〈개정 2024.5.13.〉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4.5.13.>

1. 교육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
2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3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설치과정

제9조(학습기간)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0조(학습일수)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지원자격)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(선발방법)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설치과정 등)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4조의 학습비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본원의 설치과정의 교·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학습비)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다.

제14조의1(학습비 감면) ①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다.

1. 본교 재학생, 졸업생, 교직원, 교직원직계가족 및 특별대상자의 경우는 수강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강좌별 감액비율은 최대 50%로 하며, 특별대상자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전항의 대상자는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 재학증명서 1부.
2. 본 대학 졸업증명서 1부.

3. 추천서 1부
4. 기타 증빙서류

제15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본원의 수료자는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개별 강좌의 70%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 <별지 제1호 서식>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16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17조(상별) ① 원장은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,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학습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, 징계의 종류는 근신, 정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

제6장 재정

제18조(회계년도) 본원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9조(예산편성) ①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20조(운영경비)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비
2. 본 대학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4. 기타수입

제21조(회계업무)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회계업무는 대학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관장한다.

제7장 보칙

제22조(시행세칙)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

로 정할 수 있다.

제23조(준용) 이 원칙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